상호협력 협약서

대구대학교 청소년상담복지학과와 대구광역시 청소년자립지원관·청소년근로보호센터(이하 "양 기관" 이라 한다)는 양 기관의 공동 발전과 협력 체제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【목적】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긴밀하고 우호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교류 증진 및 상호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【협약내용 및 방법】 본 협약의 당사자는 본 협약이 정한 목적(제1조)에 근거하여 다음의 활동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력한다.

1. 공동 연구 및 학술 정보 교류
2. 학생 및 청소년 상담,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사항
3. 학생 및 청소년 근로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
4. 상호 보유한 인프라(인적, 물적) 공유
5. 기타 양 기관의 협력관계 활성화와 공동발전을 위한 사항

제3조 【협약 변경】 본 협약은 협약 당사자 간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해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.

제4조 【비밀보장의 의무】 협약 당사자는 업무상 취득한 상대 협약기관의 비밀과 일체의 정보 및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.

제5조 【협약의 효력】 본 협약은 협약 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본 협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.

제6조 【기타】 본 협약서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하고 양 기관 대표자 서명 후 각 1부씩 보관한다

2023년 4월 20일

대구대학교 청소년상담복지학과	대구시청소년자립지원관 대구시청소년근로보호센터
학과장 박 재 연	관 장 이 준 기
박재연	이준기